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수신 관내 건설공사 발주자 귀하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성실의무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기준)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적법하게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위법 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발주자의 기술지도 위법 사례 1부. 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근로감독관	이철기	과장	전결 2025. 5. 29. 나기호
협조자			

시행 건설산재지도과-1656 (2025. 5. 29.) 접수

우 352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둔산동 1303 대전지방노동청) 4층 건설산재지도과 / www.moel.go.kr

전화번호 042-480-6318 팩스번호 042-480-6299 / cheolki@korea.kr / 비공개(5)